

제438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25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3)
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8)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5)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3)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2)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6)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0)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7)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8)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3)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9)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7)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5)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7)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0)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2)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8)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0)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1)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3)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3)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8)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7)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0)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2)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5)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4)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2)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6)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1)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4)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2)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1)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6)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2)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1)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3)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0)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7)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1)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5)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8)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9)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5)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6)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8)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4)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6)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7)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86)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8)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7)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1)

6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6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2)
6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2)
7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6)
7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7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7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7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7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7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7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7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8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5)
8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06)
8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8)
8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6)
8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1)
8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0)
8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6)
8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5)
8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7)
8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9)
9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1)
9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9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9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4)
9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4)
9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7)
9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9)
9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9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7)
9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2)
10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9)

10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8)
10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3)
10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0)
10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4)
1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8)
10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3)
10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4)
10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5)

상정된 안건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7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7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7
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7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 7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3) 7
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8) 7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5) 7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3) 7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2) 7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7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7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6) 7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0) 7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7) 7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8) 7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3) 7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9) 7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7) 7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5) 7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7) 7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0) 8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2) 8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8) 8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0) 8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1) 8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3) 8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3) 8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8) 8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7)	8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0)	8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2)	8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5)	8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4)	8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2)	8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6)	8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1)	8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4)	8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2)	8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1)	8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6)	8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2)	8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8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8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8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8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8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	8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1)	8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3)	8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0)	8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7)	8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1)	8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5)	8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8)	8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9)	8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5)	8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6)	8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8)	8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4)	8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6)	9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7)	9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86)	9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8)	9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7)	9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1)	9
6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15
6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2)	15
6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2)	15
7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6)	15
7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26
7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26
7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26
7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26
7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26
7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26
7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26
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26
7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26
8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5)	26
8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06)	26
8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8)	37
8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6)	37
8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1)	37
8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0)	37
8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6)	37
8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5)	37
8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7)	37
8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9)	37
9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1)	37
9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44
9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44
9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4)	44
9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4)	44
9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7)	45
9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9)	45
9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45
9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7)	45
9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2)	45
10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9)	45
10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8)	45

10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3)	45
10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0)	45
10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4)	45
1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8)	45
10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3)	45
10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4)	45
10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5)	45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소위에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전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3)
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8)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5)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3)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2)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6)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0)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7)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8)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3)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9)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7)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5)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7)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0)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2)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8)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0)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1)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3)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3)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8)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7)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0)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2)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5)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4)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2)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6)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1)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4)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2)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1)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6)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2)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1)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3)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0)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7)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1)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5)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8)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9)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5)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6)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8)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4)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6)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7)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86)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8)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7)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1)

(10시11분)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6항까지 66건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중 전문위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1일에 전체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 5인과 농식품부차관의 참석하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6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심사 안건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소위 심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법 전반의 제재처분의 적정성 검토로부터 생체정보를 활용한 동물등록 등에 대해서 농림부로부터 보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지난 소위에서 축조 심사하면서 제기됐던 위원님들의 의견, 고견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난 8월 11일 법안소위 심사 시에 제기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눠 드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강화되는 형벌 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물학대행위는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로서 해외 사례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형벌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동물학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동물 구조·보호 활동을 방해한 경우 조항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 범정부 차원에서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출범하여 형벌 합리화 기준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범정부 기준에 맞춰 동물보호법상의 형벌 적정성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맹견사육허가 시 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맹견사육허가 시 필수요건인 중성화와 기질평가에 대한 면제 근거를 신설하여 번식 금지를 의무화시키고 사육장소 이탈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조건부 허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조건은 허가요건 자체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의 도입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허가 조건 위반 시에 허가 철회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맹견 소유자의 조건 준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동물 구조·보호 조치 의무 주체에 경찰과 소방을 추가하는 안건입니다.

경찰·소방의 인력 부담, 전문성, 현재 동물 구조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지난 소위 당시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피학대동물을 구조·보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구조·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장이 경찰에게 현장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동물생산업자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교배·출산 월령 상한 도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자격요건 신설의 경우에는 해외 또는 국내 동물 관련 유사 분야에서도 별도의 자격제도를 두기보다는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반려동물생산업의 경우에도 매년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업인 만큼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5년마다 운영의 적정성을 재평가해서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갱신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복지 차원에서 생산업뿐만 아니라 영업 종류별로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교배·출산 월령 상한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10개월의 의무적인 임신 휴식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출산 가능 연령, 출산 주기 등 국가별 생산업의 규제 방식이 현재 다양하고 출산 연령 상한 설정 시에도 84개월에서 108개월까지 기준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적인 임신 휴식기 부여와 출산 연령·주기 규제 중 어느 방식이 국내 실정 및 동물복지 측면에서 더욱 적합한지 또한 66개월이라는 월령 상한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쪽입니다.

동물등록 방식에 생체정보 활용 방식의 도입 근거 마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는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방식의 다양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생체정보 인식의 경우 비문, 안면인식, 복정맥 등 유형이 다양하고 기업별로 기술이 상이함에 따라 현재 신뢰도, 안전성 등 기술 검증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향후 새로운 동물등록 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포해 드린 자료 4페이지와 같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동물등록 방법을 검증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면서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방식 다양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난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검토 요청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은퇴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획예산처는 은퇴 봉사동물의 관리는 6개 정부부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소위 당시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김예지·이재관 의원님의 발의안과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6개 정부부처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각 부처는

은퇴 봉사동물의 통합 보호·관리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사항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한정애·이헌승·복기왕 의원님의 발의안과 같이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로 수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도 소관 국정과제로 은퇴 봉사동물의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재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은 예전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성범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2페이지의 186쪽 자격요건 신설 검토 등에 대해서 교육 이수 의무로 그 대로 존치하자는 게 정부 의견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승규 위원 그런데 동물생산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자는 신장식 의원 등의 발의 이유가 있어요. 저도 지방에서 보면 유기견이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모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업자한테 들은 바로는 유기견들이 하나둘 달려들어서 처음에 그냥 밥을 줬더니 그 뒤로 때로 물려온대요. 그러니까 유기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생산업자들이 동물을 너무 공장에서 찍어 내듯이 내고 있다, 그래서 동물복지 차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둘 것이냐, 여러 가지 유기견 문제나 지금 동물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작용의 최초 발원지가 생산자에 대한 통제 부실이다 이런 지적들을 동물보호 관계자들이 해요.

그런데 이걸 그냥 국내, 그러니까 물론 이게 허가제든 뭐든 할 때 문제도 많겠지요. 그것은 저도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동물 이수 교육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는 것으로 지금 현장에 나오는 부작용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더 저기 할 건 없지만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 지적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은퇴봉사동물 지원센터 이 부분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은퇴봉사동물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가? 지금 1년에 나오는 은퇴봉사동물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 매년 200마리 정도……

○강승규 위원 매년 200마리 정도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리고 현재 6개 부처에서 봉사동물은 1300마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현재 1300마리고 매년 200마리 정도 은퇴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은 소관 부처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소관 부처에서 폐사시키고 그런다고 그러던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가능하면 지금 현재 입양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고 입양 이후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입양에 대해서도 그런 통계가 다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검역견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입양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노령견이다 보니까 입양인들의 부담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가 입양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승규 위원 저는 그래서 법안에 이렇게 이런 조항들을 신설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정부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어떤 계획이라든지 현황에 대한 파악, 이에 대한 종합계획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은퇴봉사동물 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의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도 제가 관련 단체로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봉사를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리트리버 같은 경우도 요즘 입양이 잘 안 된대요. 그러면 그들이 실제 쓰는 봉사 기간이 한 8년인가요? 7~8년이고 실제 수명은 15년 같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사이에 별일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6개 부처에서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위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은퇴봉사동물 센터를 저희들이 조속히 설립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2쪽이요, 제가 질문했던 동물생산업자 관련해서 정기교육 이수 의무가 현재 있는 것이고 허가갱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언제 도입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이번에 법 통과시켜 주시면 준비해서 저희들이 조속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이와 별도로 자격요건을 도입하는 경우 구체적인 자격검증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게 특별히 추가 검토 없이 문서에만 ‘추가 검토 필요’ 적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는 따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격검증 내용과 필요성과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필요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검토가 필요하다고 끝내지 마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교배·출산 월령 상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에도 있는 거고. 그러면 구체적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도 여기도 역시 또 추가 검토 필요한데 추가로 검토해서 두 개 다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저도 지금 신장식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강아지 공장이 제일 문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텔레비전,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나고 실제로 현장을 가 보면 대단히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신 휴식기 이런 걸로 출산, 그러니까 출산 주기 제한으로 할 건지 아니면 월령 제한으로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서 하실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임신 휴식기가 있고요 다른 나라에는 임신 휴식기가 없이 월령 제한이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로 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우리는 현재 임신 휴식기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산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안 되고 있어요, 법에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강아지 공장 다 가 보셨어요? 가 보면 10개월로 임신·출산 주기 제한이 있는데 안 지키고 강아지 낳으면 또 임신시키고 강아지 낳으면 또 임신시키고, 그래서 강아지 공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뭘까요?

그러니까 단속을 나가서 그런 거 어기는 사람을 전부 다 처벌하든지 그래서 못 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행정 능력이 그게 미쳐요? 안 되고 있잖아요. 못 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강아지 공장들을 공무원들이 다 찾아가 가지고 단속을 하냐고요,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가 가지고 어디 신고하면 거기만 가 가지고 범법이 있다, 그게 언론에 나고 가끔 가다 그게 문제만 되는 거지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걸로 하고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걸로 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관님이 현실을 몰라요, 이 문제에 대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걸 해결하려고 생후 몇 개월 이내의 강아지는 사고파는 걸 금지해 봤어요. 금지하면 개가 크는 동안에 사료를 먹여야 되잖아요, 강아지 공장에서. 사료를 먹여야 되니까 그 사료값을 감당을 못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료값 포함해서 강아지를 팔려면 되게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못 팔아요. 그래서 분양만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인들을 통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기견을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내 얘기 그냥 들어요, 답변 안 해도 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책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사고 못 팔게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늘리게 만들어서 아예 판매를 못 하게 그걸 막든지, 그게 싫다면 이런 강아지 공장들, 강아지 파는 곳이

많잖아요. 거기를 다 단속해야 되는데 이걸로 규정해 놓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그거를. 지금 실종 사건도 제대로 수사 못 하는 판에 강아지 그걸 누가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제대로 된, 우리 일인당 GDP가 3만 7000달러잖아요. 이제 그거에 걸맞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봐 주십시오, 차관님이 딱 총대 잡고 담당 과장·계장한테 맡겨 놓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분하게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태 위원 소위자료 7번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발의자였던 김성원 의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의자께서 이것 추후에 관계부처하고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셔서 가지고 차후 소위에서 다뤄 달라는……

○소위원장 윤준병 보류하고?

○김용태 위원 예,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8번 몇 쪽이지요?

○김용태 위원 소위자료 7번입니다. 11페이지.

○소위원장 윤준병 11페이지?

○김용태 위원 예,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리고 소위자료 15번, 35페이지입니다.

동물을 차량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와 관련한 학대행위를 명시하는 법안인데요. 지금 현행 법안으로도 동물학대행위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이렇게 한번 더 하는 것이 과연 법적인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신중한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위자료 24번, 91페이지 봉사동물과 관련해서 제가 차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 농식품부의 검역건 같은 경우에 아프거나 이럴 때 비용이 들어갈 때 그 예산 항목이 뭐로 들어가나요,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구체적인 예산 항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은퇴 후에도 관리하는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동물들이 은퇴했을 때 입양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보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 다 보호를 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물산에서 운영하는 시각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봉사동물에 비교해 봤을 때 입양이 굉장히 잘 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물산에서 입

양했을 때 노견이다 보니까 치료가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을 삼성물산에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입양,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봉사동물 같은 경우에는 입양률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입양률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정부에서도 예산으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일정액 월별로 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15번 학대행위와 관련된,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학대에다 더 추가하는 것이 과하지 않냐는 김용태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어요.

○**김용태 위원** 과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물론 이 행위는 처벌받아야 되는데 현재 법상으로 이미 동물학대 규정이 있어 가지고 처벌이 가능한데 더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소위원장 윤준병** 그에 관한 답변, 정부 측.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취지와 같이 저희들도 동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이 필요 없다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똑같이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내용은 입법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정리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또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및 제46항, 제51항, 54항부터 59항까지, 제62항, 64항부터 66항까지, 이상 5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동물보호법(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6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2)

6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2)

7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6)

(10시35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0항까지, 4건의 자유무역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의사일정 제67항부터 70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한번 거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1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은 2페이지에서 보시듯이 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혜기업에 출연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정부의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 동 기금이 민간기금으로서 그간 3200억에 달하는 조성 및 운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등 투명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해 온 대안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2번의 협력기금 조성 목표액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은 내년 1월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동 기금의 조성 목표액 규정을 10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기금 조성 활성화 조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혜기업 특징이 어렵고 매출액의 구체적인 비율, 출연할당액을 정하는 것은 기업에게 기금 출연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이라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재원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출연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현재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부금품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쪽,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목표액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 피해 누적을 감안하여 조성기간 연장이 현재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명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2037년 1월 16일까지로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제가 축조심의 과정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게 정부든 또는 기업이든 기금을 출연하도록 자율적으로는 했지만 기금 조성이 이렇게 너무 미미한데도 왜 정부는 이것을 방치했나요? 정부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러면 결국 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그걸 농림축산부에서 이대로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 이게 할 게 아니라, 왜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피해……

○**강승규 위원**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이 어렵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정부가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대책을 지원하고 있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혜택 보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농어업인에게 지원을 하자 해서 자발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는 거와 같이 당초 조성이 10년간 1조 목표였습시다만 현재 320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저조한데 이에 대해서 농림부가 뭐를 했느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동안 저희들이 독려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편의성, 홍보 이런 것을 했습시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강승규 위원** 우리가 변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강제로 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지금 강제로 하기에 저희들이 좀 제한적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라든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강제할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라든가 관련 법에서는 활동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민들을 속인 법이네요, 그동안? 수혜를 입는 기업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농민들에게 얘기를 해 놓고 실제 기금 조성도 못 하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자칫하다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농민들 속인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거냐를 좀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혜기업을 민간기업으로 바꾸고 매출액의 0.005% 이상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기업들에게 너희가 수혜 받은 것의 이만큼이라도, 0.0005라도 기금 조성하는 데 잘 해라 그러는데 이 조항, 이것마저 빼면 더 이것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출액의 일부를 누가, 그냥 모든 기업이? 그것도 일부를? 그것도 최소한의 저기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더 약화되는 거지요. 생색만 내는 거지요. 아무런, 이것은 법 개정 취지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실익이 기대되나요? 이것은 법의 개정도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 축조심사 했는데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법 같아요. 정부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나 대통령도 이것 지적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농림부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뭘 어떻게 하든지 FTA에 따른, 앞으로 CPTPP 체결되면 농식품 또 밀려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 그거는 또 그냥 그때 가서 농민들 반발하고 적절히 또 기금 조성한다 떼우고 말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번 농어촌상생기금은 CPTPP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강승규 위원** CPTPP도 똑같은, 그것도 FTA 아니에요? 지금 기존 FTA 체결이 된 것은 기금 조성도 되지도 않고 지금도 개정하려고 하더라도 해 봐야 소용없다고 차관께서 고백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CPTPP 체결돼 가지고 농민들한테 또 사탕발림 주겠지요. 그거 다 또 속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개정에 대해서, 내가 개정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농림부가 기본적으로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농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것에서 못 한다 하더라도 농림부는 훨씬 더 강하게 FTA 체결 기업이나 뭐든 이 기금 조성에서 농업에 지금…… 지금 농업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너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대안을 내 줘야지요. 법안이 더 약화돼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의 가장 큰 취지는 그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업의 자발성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출연하겠다는 게 이 법 개정의 취지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간 자발성에 기인하다 보니까 너무 약화돼 있는데 단 조금이라도 정부가 책임감을 더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일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 듣자고 이렇게 질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는, 더 책임감 갖겠다는 그런 얘기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좀 현실적으로 농업에 FTA 수혜가 났으면 그 수혜 나는 기업들이 지금도 어디에서는 남아도는 초과이익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만약에 CPTPP 같은 경우도 다시 체결되면, 그게 그동안 체결되지 못한 이유가 농식품 수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한다며요? 이런 것도 대책 못 내놓는데 그때 가서 만들어 낸 대책은 다 저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농민들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농림부가 좀 더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냥 사탕발림…… 정부가 나중에 재정으로 보충한다고 해 놓고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가 20대 국회 때 대표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발의를 할 때 취지하고 많이 왜곡돼서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매년 1조 원씩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 또는 반자발적 출연을 통해서 연간 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10년 동안 운영토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그 당시에, 제정할 당시에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출연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부에 맡겼거든요. 그래 왔더니 완전히 자발적인 출연으로 바꾸면서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기업 출연의 기준액이 부족할 경우에 이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전혀 안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출연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정부출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기재부와 그 당시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됐니 안 됐니 하면서 결국은 아직까지 1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지금 딱한 실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FTA 지원법이 기대하는 바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정부출연의 보충적 방법으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지금은 기획예산처로 바뀌었지요—기획예산처하고도 협의를 강하게 해서 정부에서 일정한 정도 뒷받침이 되도록 반드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그래야 정부가 부담을 해야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 출연을 더 하도록 촉구라도 하는 성의라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꼭 좀 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시 FTA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을 국정감사에서 불러서 출연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따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반드시 이 점을 유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초 계획처럼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출연이 차질 없이 되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기간 연장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워낙 기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0년쯤 연장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반드시 정부의 보충적 출연 방법 검토를 하고 또 출연 기간의 연장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통령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아니, 정부출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회계로의 전입 내용을 삭제하자 그래서 정부출연할 수 있는 법의 근거 조항을 지금 윤준병 위원님께서 내셨는데 이걸 삭제하자고 그러고 어떻게 출연하시는 거예요? 그냥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얘기 말고 실제로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1조 원이 출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일정 부분액을 정부에서 출연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신장식 위원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을 드려. 내년 예산부터는 일정 부분액을 정부에서 출연한다, 거기에 무슨 액수가 있고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지요. 책임 있는 정부에서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아직 예산이 최종적으로 정부 내에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입니다.

○**신장식 위원** 차관 부처에서는 얼마 올리셨어요? 우리가 기획예산처 가서라도, 장관님한테 가서라도 데모라도 해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려니까…… 얼마 올리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기본 방향은……

○**신장식 위원** 방향 말고 액수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거출하지 못하는 70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신장식 위원** 수년은 2년부터 20년도 수년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오전 회의 자리만 그렇게 추상적인 말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인데. 기획예산처 가서 같이 뭘 얘기를 해야 되면 우리 부랑 위원들이랑 다 가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추상적인 말로 그냥 넘어가시면 그냥 오늘 회의하고 끝나는 거예요, 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힘을 모으자고 하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도와 드리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도와 드리겠다고. 도와 드리겠다고 하는 말인데 뭘 도와야 될지를 모르겠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뭘 도와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부 여당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따로 당정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도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 돈이 그러면 3200억은 어떻게 조성됐고 3200억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민간기금이기 때문에 상세 자료를 줄 수 없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걸 보니까 3200억 중에 1500억은 민간에서 왔고 1700억은 공공기관에서 왔어요. 공공기관이나 공사 이런 데서 왔어요. 민간은 1500억 밖에 안 났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찾아 찾아 찾아봤는데 기업이 사용처 지정 한 기부금이 97.8%예요. 그냥 기업이 주라는 데 준 거지 FTA 피해 입은 농민, 농어민들이 어디에 있고 그 피해를 우선해서 배분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냥 지정기부가 97.8%인데 이 지정기부도 얼마나 웃기냐면 품목만 교육 장학·복지 증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지역별 현황만 봅시다.

FTA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전남하고 전북일 것으로 다들 추정하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남하고 전북은 2.7% 2.5%밖에 안 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강원도는 11.2%가 났어요. 강원도 많이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인구 대비나 피해 농업 종사자 수나 생산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당연히 그쪽으로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아요, 저는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정부 돈 7000억 원을 또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 기금에다 주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금운용에 공공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 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깐 잘 하지도 못해. 피해자들 우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들이 생색내기용으로 가는 거고 아마 세금 감면받겠지요.

피해자들 관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기금운용에. 전남북에 있는 농어민들은 이 기금운용 상황 보면 기가 찰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기금운용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안 없이 이 상태로 1번,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2번, 그런데 국가가 책임지는 만큼 피해자 우선으로 기금운용이 돼야 된다. 농어민들은 없어지고 기업의 사실은 이해관계만 남아 있는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국가가 이 기금 종결하고 국가가 7000억 원 내기로 했던 거 7000억 원 따로 해서 피해자 우선으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한테 직접 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돈을 쥐도 피해자한테 안 가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기금이 운용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7000억 원을 순차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백 번 믿는다 치고 이거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 정부 내에서는 정부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 또는 재정 당국이 공동으로 출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만들려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아니, 구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기금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이 기금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태가 정부가 관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별도로 어떻게 기금 관리 하실 거냐고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정부가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법인의 형태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법인인데…… 국회의원들도 자료 하나를 못 받는 법인이 지금 이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출연하는 액수에 대해서 별도로 법인을 만드는 건지 어떤 건지 두루뭉술한 원칙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전남·전북에 있는 농민들에게 직접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인의 형태는 어떻게 하고 운용은 어디서 감사하고 운용 주체는 어떻게 그러면 변경을 한다든지…… 이 법 안에서 그게 가능해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들도 민간 출연 기업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현재 민간에서는 입장이 이렇습니다. A 기업이 어떤 지역에 B 사업을 한다고 노출이 되었을 경우 관련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극도로 정보를 지금 주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법에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신장식 위원 아니, 기업이 왜 그렇게 변명하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색나는 사업을 생색나는 사업 영역에다가 생색나는 지역에다 갖다 쥐야 되거든. 그것 때문이지 다른 지역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뻔한 얘기를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소위원장 윤준병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신장식 위원 질의에 저도 1000% 동의합니다.

저도 지금 그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이 기금이 조성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 게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FTA 피해 농민들을 수혜를 보는 기업 측에서 지원하자는 것이고 그것을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생색내고 자기네 뭐 하는 용도에만 조금 쓰고, 전혀 FTA 피해 농민들에게는 수혜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금 목적, 기업의 자율성 이런 거 이유로 조성 내역, 사용 출처 아무것도 자료도 줄 수 없고…… 이거 뭐하러 법으로 운용해요?

아니, 그리고 이거 무슨 개정해서 또 뭘 할 건데요? 정부에서 더 의무감을 가지고 노력한다? 정말 저거 말장난이고 이거 농림부가 너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 이렇게 법안 만들어 봐야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금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농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에 따른 보상, 어떤 대책으로 만든 것인데 실제 지금 기금을 중기부에서 소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전체적으로 재단 운영은 중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중기부가 우리 농업계의 피해를 구체적인, 그게 지역별로 할당되는 건지 또 어디에 실질적으로 피해, 농민들에게 어떻게 이게 배부가 돼야 되는지 중기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고만 그렇게 변명하면 그러면 이걸 뭣 하러 조성했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금 조성이라든지 출처 내역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법 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이걸 보류시키고 저희들도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좀 더 준비해 볼 테니 이번에는 유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질의가 이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기금이 잘 안 건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잘 안 건히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를 안 해서 안 건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게 자발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미애 위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FTA 체결을 할 때 이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 보는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FTA 체결로 수익, 이익을 많이 받았을 때 그로 인한 세금 낼 건 세금 다 내고 고용할 건 고용하고 투자할 건 투자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개인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은 이종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를 내지 않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게 당초의 많은 의견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왜냐하면 내가 벌어들인 수익은 어차피 세금 낼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고 있고 국가가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내야 할 이유가, 그것도 지속적으로 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초기에 1·2년은 또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FTA 체결로 인한 수혜 기업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 자체가 애초에 시간이 지나면 기금의 성격이나 기금의 구성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좀 바뀌었어야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 얘기 지적을 했었는데요. FTA 피해 작목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도 농림부는 굉장히 까다롭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 농가가 피해를 입어도 그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리고 신고 대상 품목에 그것이 선정되지 않으면 이게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 요건들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지속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저는 농림부에서 익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걸 다시 뻔질하는 방식으로 이 기금을 지속하겠다는 얘기는 게 농림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처에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답변 좀 드릴까요?

○**임미애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처음에 이게 한중 FTA 하면서 법인세 내고 세금을 건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수립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 기업들이 농어촌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었는데 충분히 못 한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피해보전직불금은 현재 신청주의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다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좀 모호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제기해 주시는 제도화시키고 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하게 지금 현재 명확한 답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김성범 위원** 논의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정부 내부적으로 출연금을 어느 정도는 낸다라고 돼 있는 것 같고 다만 내년도 예산 반영부터 들어갈 텐데 지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차관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에도 정부 출연 근거를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는 게 무의미한 것 같고요. 저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시점에서 정부에 어느 정도의 출연을 하겠다 하는 게, 규모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정부를 출연 근거를 넣을 수 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김성범 위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출연을하기로 했으면 저는 관련돼서 두 가지 조치가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으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개별 기업이 어떤 지역에 어떤 용도로 쓰도록 해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조건을 붙여서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구조로는 지금 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더군다나 정부 출연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기존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음 소위 때 그런 부분들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 기업에도 어쨌든 한 번 더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쨌든 이익을 보는 경제계에서 일정 정도 기여를 하겠다라고 당시에 나름의 사회적 합의가 돼서 어쨌든 이 법이 된 건데 자발적이라는 이유로 그만한 몫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부득이 정부가 출연을 하면 출연을 하는 만큼 경제계에도 한 번 더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지. 그래서 부처 단위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정부 출연하게 된 것도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대통령님 요새 경제 총수분들, 경제단체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그런 계기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출연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끔 경제계도 같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병행돼야 정부가 출연하는 의미가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 출연은 출연대로 하고 뭐 했냐 하는 지적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한 보완 대책 신속하게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윤준병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신장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양수 위원님도 한말씀하실 거지요?

○이양수 위원 예, 30초만 할게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신장식 위원 먼저 하세요.

○이양수 위원 먼저 하세요.

○신장식 위원 아니, 저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그래요, 10년 연장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농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지는 솔직한 태도인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 10년 동안 안 모아진 돈이 지금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돈이 모아지겠어요? 잘 안 모아질 것 같거든요. 처음에 조금 대통령께서 신경 쓰고 그러면 첫 1년 동안은 또 얼마간이라도 모아지겠지요. 그다음에 모아지겠습니까, 의미 있는 액수로?

그런데 정부는 농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조에서 모자랐던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저는 책임지는 방식이 이렇게 기금을 10년 연장하고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이야기로 포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민들과 상의하고 또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7000억의 정부 기금이 FTA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딱 잡아서 아예 정부에서 ‘7000억 원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농민들에게, ‘정부가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7000억 원을 약속했던 대로 약속을 지키는구나’, ‘앞으로 10년 더 하면서 우리 1조 더 먹을 거예요’라는 얘기보다는, 그 말은 오히려 신뢰가 안 가고 ‘약속했던 7000억 원이라도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농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그게 저는 오히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도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정부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저는 사실 입이 아파 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회의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간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임미애 위원님 부군 되시는 김현권 위원 계실 때도 똑같은 얘기를 김현권 위원한테 하셨는데 지금 임미애 위원님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임미애 위원 그래요? 몰랐어요.

○이양수 위원 똑같습니다, 답변이. 농림부에서 이것은 제가 일일이 또 얘기해 봐야 입만 아프니까…… 농림부에서 지금 처음 나왔어요, 정부 출연. 용두사미가 될지 진짜 의미가 있는 금액이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입 안 아프게, 10년 동안 어떻게 똑같은 답변을 하고 똑같은 회의를 하고 질문하고 답변합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우리 위원님들 많은 우려와 걱정, 그동안의 우리 농식품부의 일종의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지적들이 있었어요.

아마 오늘 농식품부에서 축조심사가 가능하도록 대안을 내라고 그랬는데 대안을 제대로 안 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조문에 대한 조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더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내용을 꼭 답아서 다음 소위 심사에서 결론 낼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를 해주는데 일단 정부 출연의 규모와 내용 어차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1조 하기로 했는데, 3000억 징수했는데 못 한 부분 정부가 1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내고 그다음에 정부가 출연한 내용도 앞으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근거 만들고, 그 내용이 담겨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재단에서 기업의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못 내는 것이거는 법적으로 답아서 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서 상임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체계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기부 휘하에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맞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한테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 가진 자가 냈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7000억 정부 출연하면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겠지만 거기다 겹들여서 기존에

제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원화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체계 만들고 그 내용들이 일부 담겨 있는데 그다음에 정보 공개도 우리 농해수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담기도록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담긴 내용들이 이제 발효됐으니까 그 내용 축조심사하고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다음 소위에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우리 수석전문위원께도 보고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심사하고 다음에 축조심사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준비하겠습니다.

7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7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7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7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7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7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7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7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8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5)
8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06)

(11시14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71항부터 81항까지 11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 관련해서 일단 세 번에 걸쳐서 심의가 있었고요. 소위 공청회도 있었고 진행은 됐습니다만 또 두 분의 국힘 소위 위원님들께서 입법발의를 하셔서 직권상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설명하시고 그동안에 우리 소위에서 심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농협중앙회하고 또 농식품부하고 그동안에 협의된 내용이 있으니까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71항부터 81항까지 11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권 1페이지부터 보시면 9건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위 심사와 또 소위원회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끝의 2건의 법률안, 강승규 의원님 안과 김용태 의원님 안은 어제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서 지금이 소위원회에 직회부돼서 오늘 처음 병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자료 5페이지부터 보시면 지난번 소위 때 설명을 드린 수정의견 및 정부 대안의 주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새로 발의하신 강승규 의원님 안과 김용태 의원님 안

의 주요 내용을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과 비교해서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먼저 강승규 의원님 안과 김용태 의원님 안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강승규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조합장 및 조합원 직선제를 병행 실시하고 조합장과 조합원이 각각 투표한 득표율을 50 대 50으로 합산한 방식으로 중앙회장을 선출하자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또 김용태 의원님 안은 조합의 중앙회장선거 투표권을 해당 조합원의 투표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의 간선제 방식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감사기구에 대해서도 정부 대안은 외부 독립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안인데 비해서 강승규 의원님하고 김용태 의원님 안은 현 조합감사위원회를 농협 내부에 그대로 두되 감사위원 추천이라든지 또 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의 회계장부 공개요건에 대해서는 정부 대안은 조합원 20인 또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김용태 의원님께서서는 이 조합원 동의 수를 20인에서 40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농식품부에서 그동안 개정안과 관련해서 중앙회하고 협의된 내용을 쟁점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별지로 나누어 드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농협하고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전반적으로는 큰 틀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 현재 미세하게 몇 가지 쟁점은 남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감사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농협 감사 기능을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중앙회는 조직 내부에 두되 인사·조직 등 운영상 독립을 강화하려는 안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중앙회 안보다는 인사·조직 등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 구성, 선임 방식, 감사 대상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독립법인의 정도에 대해서는 중앙위하고 이견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외부전문가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만 중앙회에서는 현재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협의를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부안은 인사위 의사록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함께 첨부하도록 했습니다만 중앙회는 녹음기록 제출 등에 대해서는 현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회 보고 의무는 유지하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첨부는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정범죄에 대해 1심 판결을 포함한 유죄판결 시 직무정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만 중앙회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현재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외 중앙회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회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서는 정부, 중앙회는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선거비용 부담 쟁점은 중앙회에서 부담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피선거권과 관련해서 중앙회는 정당 가입 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하였고 정부도 이를 수용기로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합·중앙회의 회계장부 열람권 강화 관련입니다.

정부안은 조합의 경우 조합원 2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 시, 중앙회는 회원 1개소, 조합원 20인 이상의 동의 시 회계장부 열람권을 인정했습니다만 중앙회는 과도한 청구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중앙회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30인 또는 100분의 3, 중앙회는 회원 100분의 3 이상 또는 조합원 100인 이상 기준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감독권을 중앙회·조합에서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대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회장 겸직 제안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은 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했습니다만 국제협동조합기구 의장 등 대외적으로 대표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 임면 시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부안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4쪽입니다.

중앙회 이사의 회원·조합원 충실 의무는 조합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을 유지하였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으로 중앙회 등 임직원을 제외하는 정부안은 내부적으로 자기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고려하여 중앙회 등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집행부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집행간부 임면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하는 정부안은 중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고 이사회 보고 등 중앙회 정관 개정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무이자 자금 관련입니다.

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의무는 삭제하되 중앙회가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협의 내용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우선 중앙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제가 대안입법도 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앙회하고 일정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합시다만 전국의 조합장들이 다 반대를 했고 상당수 조합, 그러니까 현직 농업 관련 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입니다. 단위조합들의 연합체가 중앙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회의 회장, 그 대표는 회원이 뽑아야 되는데 회원사가 단위조합장들이예요. 이 원칙을 지금 계속 무슨 조합원의 뜻을 반영한다고 해서 조합원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그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농림부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농협 관계자, 현직 조합장 그리고 무슨 농협 전직 기획자·기획자들, 수많은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어요. 그런데 모두 다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협의 어떤 중앙회장의 독선이니 뭐니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개혁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 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선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냈던 거고요. 그 대안의 요지는 어찌 됐든 회원제, 회원의 투표로 그 단체의 대표를 뽑는다는 중앙회장선거의 원칙을 지키고 우리 정당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각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표자나 뽑을 때 정당의 대표는 그 정당의 회원들, 당원들이 뽑도록 돼 있는데, 어찌 됐든 나중에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야 되는 게 정당의 특성이니깐 그 당원들이 일반 국민 등을 여론조사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증을 하지요.

아니, 농협도 만약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기본 골격을, 정당의 대표를 정당원을 무시하고 전 조합한테 오픈 프라이머리로 한다고 하는 그 방식이 전체적으로 채택되지 않는데 그 회원의 대표자들을 다 무시하고 전 조합원으로 뽑는다는 것은 정당이나 농협중앙회나 어떤 기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선 대표자들인 단위조합들은 반영을 하고 조합원 등을 부수적으로 어떤 일정 정도 비율로 의견을 반영하면 지금 농협법의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또 제가 중앙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정부가 직선제를 그렇게 원하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비용은 정부가 대시오’ 그랬더니 정부는 ‘그걸 왜 우리가 내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농협에서 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게 농민들한테 쓰여야 되지 선거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농협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무슨 직선, 온·오프라인 투표를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다. 그것이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 만큼 그런 부분 등은 온라인 투표 등으로 반영하면 개혁의 취지도 일정 정도 반영하고 농협법의 중앙회장 제도의 골격도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위원장 윤준병 강 위원님, 좀 축약해서……

○강승규 위원 그다음에 왜 협동조합에 대해서 인사 추천이나 무슨 감사기구 등에 정부가 이렇게 관여를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관치라는 것이……

아니, 협동조합 인사기구에 왜 정부가, 농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야 돼요? 협동조합 인사에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협동조합 인사가 그대로 안 될 때는 그 협동조합

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 되는 거지 인사추천위원회에 왜 정부 기구가 들어가요? 정부가 위원들을 추천해야 돼요?

그다음에 감사도 농협중앙회, 농협이라는 게 하나의 협동조합인데 거기에서 감사기구 법인을 왜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뭘 하려는 거지요?

아니, 농협의 농협중앙회에서 회원사 단위조합도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런 조합의 단위 조합도 감사하고 중앙회 내부도 감사하는데 그 감사기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그 감사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율권을 강화한다든지 해야지 그걸 기구로, 외부로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빼낸다?

아니, 이게 무슨 정부 기구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또 각종 인사추천위에도 정부가 다 들어가는 것은 결국 지금 정부가 이러이러한 이유 등을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농협 조직을 쥐려는 것이다, 관치금융이라는 상투적인 수법을 안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인사라든지 감사기구를 독립하고 정부가, 정부 인사하고 정부위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하는 것은 절대 이것은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 지금 농협의 기본 구조를 바꾸자는 건데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협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따져 보면서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농협 대개혁이 있었지요. 2011년이 맞습니까,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 2011년에 그때 가장 큰 요지는 신경 분리, 그러니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나누고 중앙회장이 경제지주를 집중적으로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개혁의 취지는 중앙회장의 힘 빼기였어요. 농협중앙회장이 소위 농민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전횡을 했을 경우, 잘되면 상관없지만 전횡을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부작용을 그동안에 노출이 된 것도 있었고 해서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중앙회장의 힘 빼기가 두 번째 개혁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뭘니까? 비상임으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임기를 단임으로 바꿨습니다. 아마 기억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근무 행태와 또 내부 경영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의 전권을 다 당연히 중앙회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비상임이라는 것,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 출근 안 해도 괜찮아요. 가끔 전화로 확인하거나 또 필요할 때, 일이 있을 때 가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농협중앙회장은 소위 말해서 근무 상황, 그러니까 근무 관리라는 게 비상임이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농협중앙회장은 급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사무 비용을 충당하는 이런 상황이 정상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2011년의 시대 상황이 또 시대 인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와 같은 농협 대개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 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비상임에 단임으로

중앙회장을 만들어 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회장은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중앙회장은 내부 전횡을 할 수가 있고 여전히 중앙회장은 과거에 노정됐던 수많은 부작용들을 똑같이 저질러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혁을 직선제로, 전 조합원 직선제로 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전 조합원 직선제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그런 가치 판단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선제를 했을 경우에 비상임으로 중앙회장을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의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논의 할 때 위원님 아시겠습니까마는 현재 지나치게 권한이 큰 회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안정화시킨 이후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개호 위원** 상임화는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상임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개호 위원** 아니, 중앙회장을 직선으로, 전 조합원 직선으로 뽑으면서 비상임으로 남겨 두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선거 기준, 직선제를 하면서 비상임으로 그렇게 남겨 두는 게 과연 옳은냐? 그렇게 하려면, 직선제를 하려면 저는 상임으로 바꾸고 또 필요하면 4년 연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직선이라는 취지의 의미와, 그 취지하고 제도가 일치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임으로 그대로 두면서 직선으로 바꾼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선으로 뽑은 사람을 비상임으로 두는 건 도저히 선거 논리에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함께 검토돼야 될, 세트로 같이 봐야 될, 예를 들어 그게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상임화와 직선제를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 조합원 직선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선거는 공영제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선거를 관리하고 또 필요하면 선거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그런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 직선제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를 뒷받침시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된 가운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 농협 대개혁의 그 취지를 지금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개혁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번 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문금주 위원입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직선제든 감사위원회 설립이든 제가 봐서는—저는 정부가 하자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전체적으로 방금 앞에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비용이. 그러면서 그거를 전부 다 중앙회가 부담해라? 제도를 정부가 주도해서 바꾸도록 하면서 중앙회한테 그 비용 부담을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회가 부담하면, 농협이 부담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써야 될 돈인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농민들한테 줘야 될, 앞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도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 농어촌이나 농민들한테 들어갈 비용은 크게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 뭘 일 있으면 농협한테 다 시키잖아요, 소비촉진이든 뭐든. 어찌 됐든 농협이 또 부담해서도 하잖아요, 정부가 예산 세워서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개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공영제를 통해서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직선제로 바뀌어야 되고 또 직선제로 하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회장이 책임지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개선도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추가로 또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마 회장 자격, 피선거권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정치인들이 못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정당 가입 제한을 한 것 같은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지금 어차피 중앙회장 하실 분들은 지역의 조합장님들 또는 조합원들이겠지요, 기존으로 봤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문금주 위원 그분들 정당 가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

○문금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정당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1년도 지금 저는 그것도 이상한데 3년으로 확대해서 그분들을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돼요.

정치인을 배제시키려면 더 다른 조건을 가지고 경영 경험이랄지 유사 경력이랄지 이런 자격 제한을 좀 더 두는 게 낫지 정당 가입 제한 확대, 정당 가입 제한을 해 가지고 이게 정치인 배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기존에 중앙회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생각하고 있는 지역조합장들이나 다른 조합원들을 아예 출전을 못 하게 막는 독소조항이 돼 버릴 수가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담된다는 것은 인식합니다만 이게 중앙회는 조합 내부의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차적으로는 자기부담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회장 자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현재 교육감선거에서는 동조항과 유사한 조항에 1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했었고 3년으로 또는 5년으로 하자는 것은 현재 중앙회의 입장입니다.

○문금주 위원 교육감님하고 그게 같습니까? 교사는 정당 가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조합원들, 조합장들은 다 정당 가입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무실만 하나 차리면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여러 가지 전산 비용도 수반돼야 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준비해야 될 비용이 천문학적인, 천문학은 아니어도 잘못하면 몇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의견 내놓은 거

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리고 만약에 중앙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했어요. 만약에 보궐선거 하면 그 비용 농협이 또 부담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돈이 농민들한테 들어가면 될 돈인데, 그래서 그런 부담을 안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선거공영제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해서 제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윤준병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농협법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태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내셨던 법안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조합장분들께서 실제로 농민 조합원분들의 뜻을 왜곡해서 투표를 하는, 중앙회장 할 때 했던 행위들이 있었고 아마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의원님들께서 이 개혁법을 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의제의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요. 저도 최근까지는 농협중앙회의 회원이 일반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연하게 일반 농민분들이, 농협에 계신 조합원분들이 농협중앙회에 출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법을 보고 뜯어보니까 농협중앙회의 조합원은 일반 조합원이 아니지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현재로는.

○김용태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의 회원은 누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주로 조합입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1108개의 단위조합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대의제의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여태까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들이 맞는데 조합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회원 자격이 없는 일반 조합원이 중앙회장의 선출에 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합원이 투표할 수 있다는 생각이구요. 다만……

○김용태 위원 아니, 어떤 근거로 그게 가능할까요? 조합주의에서 회원이 아닌 조합원이, 엄밀히 말해서 법적으로 봤을 때 일반 조합원분들은 지역 단위의 농협조합에 출자한 회원이시고, 조합원이시고 농협중앙회는 단위조합이 출자해서 만든, 회원들이 단위조합인데 일반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회원 자격이 법적으로 없는 분들이 중앙회장, 그러니까 이중 구조를 뛰어넘어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가능하다는 검토의 근거는 뭘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개정안과 관련해서 회원의, 어떻게 보면 회원이 지금 조합인 거고요. 또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조문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여태까지? 법적으로 조합원이 아닌데

중앙회장 같은 것, 회장을 선출했던 조합주의를 좀 어긋나서 했던 사례가 있나요, 선례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아마 협동조합에서는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김용태 위원**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다만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받았을 때는 회원의 회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입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거는 법률 검토를 어디서 혹시, 법제실 통해서 받았을까요,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가 변호사들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용태 위원** 글썄요, 그거는 국민들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농협중앙회의 회원은 일반 농민 조합원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직선제에 대해서 아마 몇몇 국민들이 동의하셨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농협의 출자구조, 농협중앙회의 출자는 단위조합에서 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이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는 국민도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냈었던 것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대의제 시스템과 농협의 조합주의를 어떻게 하면 잘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냈던 안이 바로 이 안인데요. 1108개의 단위조합이,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때는 1108개의 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합장이 임의대로 그 1108개, 각 조합장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조합의, 지역조합에서의 지역조합원분들이 총회를 열어서 중앙회장에 대한 의결을 하고 그 의결이 나온 사람에 대해서 그 단위조합의 몫으로 한 표가 가게 하는 대안을 냈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태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했었던 그런 대의제 시스템과 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조합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행법상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차관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 위원님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취지도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합 내에서 51%를 얻은 후보가 그 조합의 한 표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인데요. 그거는 조합원의 의사가 좀 달라지는, 예를 든다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조합원수로는 1등을 했는데 전체 조합에서는 1등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이 우선이 돼야 될까라는 또 새로운 문제가……

○**김용태 위원**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돌아가서, 농협중앙회에 출자는 누가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조합이 했지만……

○**김용태 위원** 지역조합이 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아니면 기존의, 제가 여기 농해수위 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내셨던 기존의 법안대로 할 거면 지금 농협조합원분들이 중앙회에 출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일반 조합원분들이 중앙회에 출자를 하셔야 법적으로 중앙회

장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어떤 선행적인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일반 조합원분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조금 전에 강승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조합 관례에도 맞지 않고 현행법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법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승규 위원 짧게, 추가로 짧게.

○소위원장 윤준병 예.

○강승규 위원 지금 김용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합성, 조합원이 아닌데 조합원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법률 자문을 받으셨다 하는데, 혹시 그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알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 자료 제출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합성이 안 맞는데 그것을 그냥 우겨 가지고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조합원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선출할 수 있다, 그게 법률적으로 정합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고집 하니까 그 자문을 냈다는 법률회사를 공개를 하시지요.

○김용태 위원 저도 짧게 한마디.

이 법안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농협법을 수협이 쳐다보고 있고요 산림조합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를 만들면 수협이나 산림조합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강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서 법률 검토를 받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하게 된다고 선례를 농협법에서 만들어 버리면 향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도 농림부장관님께서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게 사실은 전반기에 여러 차례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마무리가 되었던 법안이기는 한데요. 여전히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가 분명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하나, 법률적 정합성에 관한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뭐였냐 하면, 이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농협중앙회를 개혁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지적이 되었던 게 힘 빼기였는데 오히려 직선을 할 경우에 그 방향에 걸맞지 않는 농민대통령을 만들어 내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문제가 발생해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던 방향과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농협은 경제조직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농촌현장이 고령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의 다수는 실제로 경영현장에서 물러나야 되는 분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경제조직의 경영권을 맡기게 됐을 때 경제조직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다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농림부는 농협중앙회를 어떤 조직으로 가져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오늘 지금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가지 주문하고 오늘 직상정된 안건도 있는 만큼 오늘 위원님들 질의된 내용 종합해서 다음 소위에서 세부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 좀 담고 또 그동안에 협의된 내용과 관련해서 주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정합성 문제, 회원의 회원이 투표권이 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아까 임미애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꽤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법적인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 하는데 법률 검토 내용 또 그동안 이거는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법률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예전에 정리된 내용 다시 한번 공유해서 그 부분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임화 문제, 직선제 할 때 상임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일단은 현 시점에서 몇 단계의 개혁을 하면서 이게 안정이 되면서 상임화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농식품부가 개진했는데 저는 상임화도 지금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상임화라고 하는 것이 전무이사 자리를 중앙회장이 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거공영제와 관련된 내용의 비용문제 제기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선제 하면 공영제를 해야 되는데 비용부담을 중앙에서 할래, 정부가 일정 부분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번 개혁의 취지는 현재 공영제로 하지 않을 때 나오고 있는 무형의 비용 이게 훨씬 크다, 그러니까 중앙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현재 되고 있는 공영제 한다면 조합 주장에 따르면 400억 정도 되는데 무형의 비용이 훨씬 크다, 운영하는 내용에서. 그래서 이걸 형식적으로 따져 가지고 그걸 조합원한테 가는 비용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무형의 비용까지 감안하면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공영제로 간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논리적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일반인들이 들을 때 아, 그럴 수 있겠다, 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플러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도록 정리도 하고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전에 중앙회하고 협의된 내용들 몇 가지 얘기하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총회 의결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거 지금까지도 독립성이 안 돼서 내부적으로 조감위원회도 구성하고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내부조직으로 운영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감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시켜야 감사

기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든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충분히 담겨야 된다는 점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사추천위원회 내용도 지금 합의된 내용 보면 조합장을 농식품부장관이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얼핏 들리는데 그것도 맞지 않을 것 같다. 조합장들의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독립성을 담보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가면 오히려 독립성이 해체될 수 있을 우려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정당 정치 개입 못 하도록 우리가 자격요건 담는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과연 맞냐 하는 본질적인 의문도 있었고, 정당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수단이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고 3년으로 하는 경우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경우에 이렇게 하면 공무담임권 제한이라고 하는 위헌 판결도 있었던 내용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각 문제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 주신 내용 포함하고 해서 다음 소위에서 지금 주신 내용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8)

8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6)

8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1)

8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0)

8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6)

8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5)

8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7)

8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9)

9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1)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부터 제90항까지 9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중** 2페이지입니다.

1번 검역업무 보조를 위한 동물검역사 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의사인 검역관의 전문적인 판단 능력 외에서 검역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검역사를 채용하도록 한 개정안은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질병 전파와 관련성이 높은 동물과 그 사체에 대한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검역사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걸로 수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번 출입국 사실 신고 및 소독·검역 대상자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사원의 업무 특성상 해외 체류 이력에 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므로 신고 등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3번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수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4번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예정된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검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일시 이동중지 기간이 최대 96시간에 그치고 부득이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하에 이동이 가능하므로 별도 정기검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5번 중점방역관리지구 사육제한에 따른 도축장·부화장 보상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직접적인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도축장이나 부화장 등 관련 업체의 연쇄 피해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직접 피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업 손실이라는 점에서 인과관계 및 보상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6번 살처분 등 보상금 감액 경감 적용 시 최종 지급기준 상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보상금 감액 경감 이후 최종 지급액의 상한을 현행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농가의 수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전염병의 조기 차단에 기여한 최초 신고자에 한해서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상 가축 전염병을 법률에 열거하기보다는 전염병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7번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감액 경감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보상금 감액을 가축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사료 문제, 원료 문제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내부 및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귀책 사유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살처분 보상금을 보전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별도로 보전비용으로 정한 경우를 찾기가 어려웠으며 보전비용의 개념이 모호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방역시설 미구비, 소독 의무 위반, 특정 가축 전염병을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방역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8번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하위법령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보상금 경감 한도 상향 규정 80%에서 90%에 대한 적용례는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하여 농가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역업무 보조를 위한 동물검역사 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효율적 검역체계 운영을 위해서는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출입국 사실 신고 및 소독·검역 대상자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을 명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의 축산물 위생 검사원을 별도로 명기함으로써 출입국 신고와 소독·검역 의무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2쪽입니다.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17쪽입니다.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예정된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승인 절차를 통해 정기검진을 위한 이동이 가능하므로 검사기간 연장 의무를 별도로 신설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사육제한에 따른 도축장·부화장 보상대상을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보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료,약품,축산,차량 등 다양한 연관 산업 전반으로 보상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사육제한 대상 농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24쪽입니다.

살처분 등 보상금 감액 경감 적용 시 최종 지급기준을 상향한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소독 등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질적 감액·경감 혜택을 제공할 경우 축산농가 전반에 방역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상금 지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감액 경감 규정을 변경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전염병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미 보상금 감액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감액 여부 제외 등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가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서 방역 의무 위반 시 보상금 감액은 필요하고 보전비용은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현행과 같이 보상금 용어의 사용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9쪽 부칙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하위법령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다만 보상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17쪽에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에 예정된 정기검사의 검사 기간 연장하는 문제 있잖아요. 현행법상 승인 절차를 통해서 정기검사를 위한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승인 절차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한테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현장에서 이것 굉장히 어렵다는 것 이해하시나요?

예를 들면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 축산농가에서 가장 강하게 항의가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인근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경에 묶여 있어서 가축 이동중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에 가축 경매 시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출하 시기가 된 송아지들이 경매장에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도축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브루셀라 이런 검사를 다 받았는데 검사 기간들이 무기한 늘어나요. 지금 여기는 이동중지 기간이 최대 96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축이 이동되지 못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시 이동중지하고 검사하는 건 좀 다른 항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 와서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임미애 위원 이것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조항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광역이나 전국 단위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최대 96시간까지 한 다음에 풀리는 형태가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번에 예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경우에는 전국이나 광역 단위에 하는 일시 이동중지가 아니고 이동 제한 명령이라 그래 가지고 방역대가 예천군에 설정 되면 발생한 대로 반경 10km라든지 인접 시군에 대해서……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요?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 이동식 이동 제한의 경우에는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풀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이동중지는 전국적으로나 광역 단위로 확산하는 걸 일시적으로 막는 거고요. 이동 제한은 발생 농장과 굉장히 가깝……

○임미애 위원 지금 그 얘기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최대 96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 기간에 예를 들면 정기검사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 이동식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시간 동안에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96시간 이내에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 시험소에 신청을 하면 이동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송옥주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부숙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때 96시간의 기간이 걸리면 정기검사하는 일정을 좀 연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하위법령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가축분뇨법에 따른 부숙도 검사는 일정 변경해 검사할 경우에 그것들을 검사해 줄 수 있도록 해서 풀어 주고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안 써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이동 제한은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 이동식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이동 제한이 됐을 때 규정상 못 나가게 막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 풀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씩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조항에 있는 일시 이동중지 말고 이동 제한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 개선되는 내용들 보고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이동 제한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시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송아지들 혹은 소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도 못 들어오고 외부에서 검사가 다 됐다 하더라도 못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가 입장에서 그게 현금이 묶여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사육 기간을 초과하거나 이런 것들이 출하 시간을 제대로, 적정한 시기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출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너무나 스틱(stick)하게 이것을 운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

각이 드는데 이것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 이동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동 제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거에는 가축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폐쇄하고 못 하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라든지 임상검사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개선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리고 참고로 일정 부분 출하 제한을 할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프로그램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차관님, 그것 출하 제한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거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몇 프로 해 주시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 충분하지는 않지만……

○**임미애 위원** 아니, 충분한 게 아니고요. 그것 문제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사료비의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강승규 위원님.

○**임미애 위원** 아니,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4쪽에 이것 있잖아요. 살처분 등 보상금 감액 경감할 때 이것 실제로 농가가 신고를 먼저 하거나 그래서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에 우선적으로 산정액 범위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소리잖아요. 이것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발생해서 신고한 농가에게는 그래, 발생한 것 잘 신고했으니까 이것을 100%까지 지원, 보상에 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있는 나는 어떤 잘못도 없이 이번처럼 사료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내 농장에서 발생했어, 내 잘못으로 발생했어. 내가 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적극적으로 했으니, 정부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 줬으니 보상을 100%까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동의. 그런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사료 먹었을 뿐이야, 그런데 걸렸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 농가가 이걸 받아들일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초로 신고한 경우에는 초기에 신속하게 신고해서 확산을 막자 이런 취지로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발생한 사례를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니까 먼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고가 아닌 농장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 없이 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고쳐서 이번 사료의 건은 100%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일단 수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생할 때 말 그대로 반대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농가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법의 근거 없이 그냥 정책적으로 이번에 100% 보상을 한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그것은 농가에서 항의가 굉장히 빗발치고 결국 사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농식품부도 인정을 하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두는 취지인 건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사실 농가 입장에서 이게 수용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대표되는 게 한돈협회나 이렇게 생산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감액하지 않는다고 개정안에 명시를 하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건데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주체가 농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는 걸 농가가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얘기 때문에도 한돈협회나 이런 데 생산업체랑도 합의한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약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한다고 하면 거꾸로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귀책 사유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감액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액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앞에 있는 귀책 사유의 법령에 의해서 감액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다른 면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가축 소유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재량 규정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해서 정부 측에서 생산업체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었고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 100% 그 사례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라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농가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한돈협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 이동식 예, 한돈협회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귀책 사유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이것 할 때 먼저 의원님이 발의해주셨는데 그다음에 진행하면서 법제처라든지 그다음에 적극행정 이런 것 하면서 충분히 재량 행위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재량 행위로 가능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는 하는데 사실은 재량 행위를 하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잖아요. 이게 늘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 이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 사례가 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미 그 사례가 정립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례를 한돈협회가 실질적으로 만들어 낸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책 사유를 지금 바로 넣는 것보다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미 사례가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상의를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저도 임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드리는데요.

돼지열병 등이 발생해서 반경 몇 km 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피해들이 있다고, 제가 우리 축산업자 간담회에서 지적하니깐 그 일대만 뭐 5km나 이렇게 반경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출하를 해야 되는 돼지를, 만약에 120km에 출하하는데 그걸 한 달이고 못 한다 그러면 그게 150km 되고 이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또 병이 발생할 확률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당하다. 적어도 출하까지 그러니까 꽤 많은 농장에 그냥 반경 몇 km를 일률적으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니까 출하를 못 해서 오히려 축사 환경이 더 열악해진 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의 의지가 없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동 제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질병의 발생도 과거와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발생 농장은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나머지 농장은 신속하게 검사해서 출하할 수 있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현재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최초 발생할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시군 단위로 지역을 정하고 합시다마는 그것 하고 나면 저희들이 발생 양상을 보면서 최대한 시군의 현상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추가로 더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2항부터 86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9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9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4)

9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4)

9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7)
9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9)
9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9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7)
9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2)
10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9)
10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8)
10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3)
10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0)
10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4)
1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8)
10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3)
10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4)
10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5)

(14시36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부터 제108항까지 18건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1페이지입니다.

1번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요청 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제출의무 부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의사에게 진료기록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 공개 시 소유자에 의한 자가 치료 등 오남용의 우려도 있으므로 분쟁해결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의사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번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의 예외적 진료 허용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내에서 동물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응급 시 상시고용 수의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물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필요한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만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진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개정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3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설치하여 보험의 적용 대상, 보장 범위, 보험료율 등에 관하여 공적보험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보험을 기존 펫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공적보험 체계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적보험 체계로 운영 시 보험 사항을 수의사법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4번 수의사의 동물병원 내 진료원칙 및 처벌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동물진료업이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겁니다. 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동물병원 밖에서 진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장 출장 진료를 인정하도록 한 개정안이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병원 내 진료원칙은 진료의 안정성, 진료기록 관리 등의 목적을 위한 행정질서 사항이고 폭넓게 규정된 예외 사유는 수의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우려도 있으므로 처벌보다는 과태료 규정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5번 공공심야동물병원 제도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되는 동물병원의 비중 그리고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했을 때 동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지속적인 재정부담의 어려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6번 공공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취약계층 등의 계층 간, 지역 간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고 유실·유기동물 및 봉사동물 등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재정부담 확대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7번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졸업 대상 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수의과대학의 인증 신청 여부에 따라서 인증 여부가 결정되므로 졸업생의 시험 응시 여부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과대학이 반드시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고등교육법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타법 사례를 보면, 약학의 경우입니다. 개정안처럼 우선 개정을 하고 차후에 의무조항으로 순차 개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8번 동물 진료 광고의 제한 및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대한수의사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의료법과 의

료기기법에서도 자율심의회를 설치하여 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9번 수의사의 결격사유 추가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가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결격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결격사유란 애초부터 수의사가 될 수 없는 자격을 정한 것이므로 허위 진료비용 청구는 이미 수의사임을 전제로 한 행위이고 면허정지 사유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10번 수의사·동물보건사에 대한 폭행·협박 및 동물병원 파괴·손상 금지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수의사, 동물보건사, 진료받는 동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폭행·협박 행위에 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11번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건입니다.

개정안은 이미 현행 법령에 의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의무적인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항목 변경 시 탄력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12번 진단서 부정 발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에 관한 건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진단서의 부정 발급자, 시설·장비 사용제한 명령 미이행자, 진료비용 게시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3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외에도 현행법상 면허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13번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제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만 정부가 진료비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지역별·병원별 운영 여건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14번 수의사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수급추계 수립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수의사 비중은 증가하고 있고 가축방역관 직위 인력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의사 분야별로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수급추계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15번 공익적 목적의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 일명 공익형 수가제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취약계층 등의 진료비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진료비 지원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만 법률에서 누가 지원 대상인지 최소한의 기본범위를 정하고 세부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공익형 수가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6번 부칙입니다.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였습니다.

수의사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쪽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요청 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제출의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 진료기록 열람과 발급 목적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9쪽입니다.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의 예외적 진료 허용입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동물 진료의 편의 및 동물 복지를 강화하려는 입법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상시고용 수요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고용주-수의사 간의 상호 견제 기능 저하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30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공적보험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수의사의 동물병원 내 진료원칙 및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현장 출장 진료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예외규정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낮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현장 혼란과 분쟁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공심야동물병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동물의료의 편의 및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심야공공동물병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법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 뒷

장에서 함께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48쪽입니다.

공공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동물진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는 공공동물병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현재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8쪽입니다.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의사 자격의 질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만 교육부와 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동물진료 광고의 제한 및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에 대해서는 일부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동물진료에 관한 거짓광고 등을 금지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동물진료 광고시장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자율심의기구인 기구의 구성, 운영, 공정한 심의 기준 마련 등 제도 설계의 구체적인 검토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1조의2항 9호를 제외하고 수용하고 31조의3, 31조의4, 31조의5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78쪽입니다.

수의사의 결격사유 추가 규정입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엄격한 마약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마약류 중독자는 원칙적으로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수의사 결격사유에 진료비 관련 사기죄를 위반하여 실행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수의사·동물보건사에 대한 폭행·협박 및 동물병원 파괴·손상 금지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형법 등 유사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폭행·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수정하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87쪽입니다.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이미 진료비 의무게시 항목이 지금 수의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기시행 중이므로 수용이 어렵습니다.

91쪽입니다.

진단서 부정 발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 강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95쪽입니다.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동물 진료비 상한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 대한 과잉 개입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101쪽입니다.

수의사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수급추계 수립 근거 마련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수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수의 인력 기본시책과 중장기 수급추계 수립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8쪽입니다.

공익적 목적의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 도입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취약계층 반려 가구의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공익형 수가제 도입과 민간 동물병원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예산처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쪽 부칙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1페이지, 반려동물소유자 등의 요청 시 진료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법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동의하셨는데 지금 수의사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반대 이유가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거기 써 놔습니다만 진료부에는 진료에 사용한 의약품과 치료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진료기록부를 보고 약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약품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은 발급은 의무화하되 저희들 의견처럼 오남용 우려가 있고, 발급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강승규 위원 그거를 오남용을 할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진료부를 무조건 다 발급하는,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발급받은 사람이 이에 대해서 자기가 약품을 직접 처방을 하든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수의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인체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들 때문에 오남용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 진료부를 봤더라도 자가 처방하기가 어려운데 동물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동물 약제비나 치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런 우려를, 수의업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했을 경우 오남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수의업계에서는 아주 굉장히 우려하던데…… 그렇지요?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행법에 보시면, 4쪽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보시면 저희들이……

○**강승규 위원** 4쪽 어디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4쪽 수정의견에 보시면 ‘동물소유자 등은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분쟁해결 또는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이렇게 써 놔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의무화한다 그게 수정의견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강승규 위원** 그러면 또 이에 대해서 수의업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 왔어요. 동물진료의 경우 표준화된 동물 의료기록 방법이 정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록부가 발급되었을 경우 동물 분쟁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가 어렵다, 분쟁 등의 소지가 많다, 사람의 치료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 하는 데 대해서 그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입니다.

표준화된 기록부, 의료와 다르게 지금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기록부 표준은 없기는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동물 의료분쟁 시 소비자들이 어떤 처방을 했는지 최소한의 정보를 알 수 없다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최소한의 진료부에는 저희가 법상으로 어떤 처치를 했는지 뭘 했는지 기록을 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들은 들어가 있고. 수의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아마 약품이 몇 그램이 들어가고, 좀 세세하게 기록될까 봐 우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표준화된 기록부를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동물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측이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록에 대한 것이 요구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표준화된 저기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기록을 해 놔야 어찌 됐든 피해자가 이런 구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은 좀 추후에 마련할 예정입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수의업계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지금 수정의견과 이런 거에 적어도 동의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아직 완벽히 동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그 우려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 진료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의업계하고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그래서 목적을 좀 제한해서 이 정도를 하는 게 어떤가에 대한 것에는 수궁을 하지만 충분치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수의업계가요?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예, 최종적으로는 약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완벽해진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라서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약물 같은 경우 반려견 소유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도 있어야 이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최근은 아니지만 지난번 복지부나 약사회 통해서 의견을 들었을 때는 반대 의견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물을게요.

수의업계에서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오남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그렇더라도 그냥 계속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했을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수의업계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농림부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이 주신 그 우려를 고려하여 저희들이 발급하는 요건은 전문위원께서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에 구체적인 발급의 사유를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남용 사례라든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해소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강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강승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방금 과장님입니까, 국장님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과장입니다.

○문금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그 부분을 좀 표준화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고 이 법안들이 마련이 되는 게 더 순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개정안은 수의사에게 진료기록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라고 돼 있는데, 마치 의료법도 진료기록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의료법은 진료기록 열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의료법 역시 진료기록 열람, 이거는 열람이잖아요, 제출 의무가 아니고.

○전문위원 이현종 지금 현재 ‘열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제출의무가 돼 있는 건가요, 의료법에?

○전문위원 이현종 의료법에서도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확인 좀 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또 의견 있으십니까?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위 분쟁해결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만 진료기록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명목상은 그 내용을 가지고 받을 수 있지요.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진료기록부는 처방전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리고 처방전도 사람의 의료에서 보면 처방을 받은 후에 며칠이 지나면 그 처방전 못 써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약이 있고 처방전 없이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이 있네요, 지금 약사법 제가 쪽 살펴보니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만약 오남용을 하려고 한다면 처방전 없이 일반 약국에 가서, 동물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 약국에 가서 처방전 없이 항생제 등을 구매할 수 있네요, 지금 약사법 보니까. 맞지요?

그러면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오남용이 되려면 사람 약국에 가서, 원래 동물 약국에 가서는 처방전을 내고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일부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람 약국 가서 수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있어요. 항생제 등 몇 가지가 쪽 있어요. 그게 강 위원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그 부분인 거지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으셔야 강 위원님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겠어요? 사람 약국에서는 수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동물의약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딱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약사법 개정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법령만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딱 보이는데요. 맞나요? 현장에 잘 계신 임미애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소위원장 윤준병** 답변……

○**신장식 위원** 그 부분만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가 어디 또 있어요, 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각지대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각지대는 맞습니다. 특히나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라 사람이 쓰는 약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방전 없이도 사람이 자기가 쓸 목적으로 사 가서 동물한테 투여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한테 투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다 하도록 하든지 하는 제도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오남용을 막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조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현재 또 그렇게 되면 약사법 부분에 대해서……

○**임미애 위원** 사실은요, 그것 못 막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사실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게 써 보니 좋더라라고 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시행이 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축의 경우는 소유자잖아요. 소유자가 경험이든 아니든 이런 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여서, 그것이 사각지대인데 그것을 그러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현

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해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신장식 위원** 저는 법률만 보니까 거기가 딱 빈자리가 보여서 여쭙본 겁니다, 법률상으로는.

○**임미애 위원** 그런데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 그것은 크게 우려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김성범 위원님.

○**김성범 위원** 65페이지 8번 항목의 동물진료 광고 제한 관련해서 제가 차관님 답변을 정확히 들었으면 수정의견 중에 31조의2의 1항·2항은 수용하고 나머지 심의 관련 사항들은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31조의2의 2항의 9호는 심의 관련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성범 위원** 예, 심의 조항을 빼면 그것도 당연히 빠질 텐데. 그래서 제가 심의 조항을 봤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적으로 작동 가능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 일단 그것은 뺐다 치더라도 그러면 32조의2 1항·2항만 남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 그러니까 감독·집행은 어떻게 하지요? 지금 이렇게만 놓고…… 뒤에 처벌 규정도 있잖아요, 벌금 3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 이렇게 되면 행정청의 지도·감독은 사실상 별로 없고 바로 처벌,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벌금 매기는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되는데 우리가 통상 과잉 광고나 거짓 광고의 경우에는 다른 제재 조치들이 좀 수반이 되고 또 처벌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하든지 행정처분을 하든지, 그러고도 안 하면 형사고발을 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렇게 체계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도 이 조항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광고의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했고요. 현행 규정에도 이와 유사한,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거하고 유사한 조항이 현재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에 들어가 있는데 그 조항을 구체화시켰다는 것을 31조의2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한다면 현행과 같은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김성범 위원** 그러면 광고에 대해서 농림부나 농림부 소속기관이 점검하고 위반되면 조치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실제 그런 조치를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건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수의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서 과대 광고, 과장 광고를 하지 말 것을 수의사법상으로는 규정을 하고 있고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벌 부분은 없지만 수의사회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이 외에도 말씀하신 사항대로 경찰 조사라든지 그리고 소비자원이라든지 그리고 공정위원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자체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성범 위원** 이 법이 되면 동물병원 광고에 대한 것도 공정위도 관할이 돼요?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러니까 뭔가 빈 공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신장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장식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윤준병** 없어요?

○**신장식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또 추가적인 내용 없으십니까?

저는 58쪽, 응시자격과 관련해서 현재 입법을 할 거냐 아니면 교육부와 사전 협의 후에 할 거냐의 순서 문제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입법했을 경우에…… 약사법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입법하고 이후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절차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이왕 여기서 입법할 때 이 법 해 놓고 고등교육법을 입법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이것은 비용도 수반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먼저 한 이후에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전에 약사법도 그런 형태로 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내용은 타 법에다 해 놓으면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말씀드렸고,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니까 이후에 보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쪽,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동물 진료의 편입 및 동물 복지 강화를 하려는 입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 입법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은 뭐예요, 보완책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이게 발의된 지가 언제 적 얘기인데 고민도 안 하고 대안도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보시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복지부라든가 수의사회 이런 데서도 제도의 취지보다는 우려 사항을 더 크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동물병원이나…… 아니, 축산농장이나 수족관은 동물병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운영하잖아요. 물론 거기 내용에 따라서는 동물병원을, 지금 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동물병원 안에다 구비해 가지

고 하는 수도 있을 텐데 동물병원 허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수의사는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고용했더니 동물병원 인허가를 안 받으면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진료행위를, 처방을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수의사를 굳이 의무화할 이유가 없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현재는 보통 예를 든다면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도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버랜드 소속의 수의사가 아니라 에버랜드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소속이 돼서 진료를 보고 있는. 그래서 구도 자체가 아까 저희들이 잠깐 위원장님께 설명 올린 바와 같이 만약에 축산농장이 예를 들어 수의사를 고용한다면 수의사는 축산농장주로부터 의사 결정하는 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행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하여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 공감하는 내용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제가 볼 때 문제 인식은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축산농장이나 수족관은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고용되는 수의사 또 수의사는 이미 자격 검증을 받은 그런 처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고용됐는데 동물병원이라는 허가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그 기능을 다시 받아라 하는 게 이중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문제 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면 이후에 공감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1번은 그러면 통과하시나요?

○**소위원장 윤준병** 1번은 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고……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도 의료분쟁 등에 있어서 동물 의료분쟁이 나면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제출 안 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이 여전히 미비한 상태에서 분쟁 등으로 한정해서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분쟁만 더 계속 늘어나고, 지금도 의료분쟁 민사소송해서 법원에서 진료기록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제출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의사법상으로는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고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 발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수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료기록 제출 의무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진료처럼 여러 가지 법체계나 사용자의 의무 규정이나 이런 게 다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사한테만 진료기록 의무를 이렇게 부과, 의무화하는 것이 맞느냐. 아까 신장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각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체계가 미흡한데, 사용하는 무슨 용어라든지 다 체계인데 분쟁해서 가면 의사는 이 병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처방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판단할 때 ‘이것 왜 보통적인 처방과 다른니까?’, 그런데 지금 그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면서요? 그럴 경우 이렇게 선불리 도입했을 더 분쟁의 소지만 우려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숙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장문으로 수의사께서 보냈는데 제가 이걸 읽어 보니까 좀 이해 가는 측면도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 하나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시다만 저희들이 사실관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의료분쟁 시에도 진료기록 제출은 의무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대요, 과태료, 안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지금 진료기록 제출의무가 없어서 여러 반려인들께서는 제출을 의무화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현재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의사법과 관련된 내용이 한 6개월 이상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숙고하자고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하겠다고 조금 미뤄 달라고 그래서 그동안 쪽 미뤄 왔던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강승규 위원** 이 정도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1항부터 제96항까지, 제104항 및 제105항, 제107항 및 108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의사법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강승규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신장식 위원님도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금주 위원** 우리는 감사 안 합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김성범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승규 김성범 김용태 문금주 신장식 윤준병 이개호 이양수 임미애

○출장 위원(1인)

이재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현중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 전한영

농업정책관 윤원습

방역정책국장 이동식

임시회의록